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6,200,000	18,786,000
일반회계	519,800,000	15,594,000
특별회계	106,400,000	3,192,000
공기업특별회계	35,100,000	1,053,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100,000	483,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000,000	570,000
기타특별회계	71,300,000	2,13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247,000	67,41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311,000	69,3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20,000	66,600
주택사업특별회계	820,000	24,6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90,000	11,7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90,000	20,700
치수사업특별회계	2,850,000	85,5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100,000	153,000
대지보상특별회계	364,000	10,92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0	1,0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161,000	1,354,83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452,000	253,5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49,07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